

#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564호
------------	-------

제출년월일 : 2004. 12.  
제 출 자 : 김포시장

## □ 제정이유

-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대상업무 명시(안 제4조)
- 나.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및 의무 (안 제5,6조)
-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 · 구성방법 · 기능 · 수당지급 근거(안 제9,10,11,12,13조)
- 라.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중식비 등 본인에게 징수 가능(안 제18조)

## □ 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정신보건법 제4조 ·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2005년 예산편성 계획

##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 2004.11. 2. ~ 11.12. 의견없음

## □ 기타참고사항 : 타시군 조례

##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센터는 김포시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정신보건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기관)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기관)중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기관)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⑤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인력)** ①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12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수 있다.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비용의 징수 등)** ①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 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협조)**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소관실·과·소		보 건 소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보건소장 백 정 혜
	담 당 직위·성명	지역보건담당 전 태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태 덕 (행정 5003 )

## 관계법령 발췌서

###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의무)**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1. 정신보건에 관한사항

###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③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양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소관부서: 덕양/일산보건소]

제정 2002.4.18 조례 제712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위치)

정신보건센터는 덕양구 보건소 내에 둔다.

###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정신장애인"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 제4조 (업무)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병 및 조울병등 만성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관리대상으로 하고 위험 인구(정신건강 관련 위험요인 보유인구), 일반인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 정신보건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5조 (운영)

-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 제6조 (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 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흐선한다.
-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등) 및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9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 정신보건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 제11조 (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맘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4조 (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30일전까지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짐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짐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 (비용의 징수등)**

①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 핫도액고시"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협조사함)**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